

2021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14:00~15:00
- ◎ 회의장소 : 본관 202호 회의실
- ◎ 참석위원 :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박재석(학교법인 사무팀장)
이강오(학생문화처장)
이관택(기획예산팀장)
정다운(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학술국장)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 ◎ 불참위원 : 박철훈(학교발전기획위원회 학부 학생대표)
임사무엘(국제인문학부 비상대책위원장)
이시형(경영전문대학원 주간MBA 원우회장)
- ◎ 배석 : 박진철(재무팀장)
정희진(학교법인 사무팀 차장)
이재승(기획예산팀 차장)
안미경(재무팀 과장)
오서준(간사, 기획예산팀 과장)

[안건 1]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1. 보고 사항

1)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보고

- 재무팀(박진철 팀장 배석)에서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함.

(단위: 억 원)

| 구분 | 등록금 | 비등록금 | 합계 |
|----|-------|------|-------|
| 세입 | 1,028 | 525 | 1,553 |
| 세출 | 1,023 | 530 | 1,553 |

* 세입 : 등록금,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본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자본부채지출, 차기이월자금

2. 위원 발언 및 질의 응답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운영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당기운영차액 -48 억원은 적자가 났다는 의미인지. 적자라면 어떤 식으로 보전되는지

학교측 답변

자금계산서는 학교의 모든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을 반영한 재무제표이고, 운영계산서는 수익/비용을 집계한 재무제표로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항목도 포함하고 있음.

운영계산서상 -48억원의 당기운영차액이 발생한 것은 116억원에 달하는 감가상각비 때문인데, 이는 대표적인 비현금성 항목 중의 하나임. 이를 제거시 운영차액은 68억원 흑자가 되는데, 이 남는 현금은 자산구입비로 쓰였다고 볼 수 있음. 자금계산서 상의 고정자산매입비가 약 70억원 정도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운영계산서의 적자는 맞는데 이 적자의 요인은 고정 자산 매입에 소요된 자금, 즉 자산의 증가 때문에 생긴 현금 부족으로 보임.

정다운(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학술국장)

학생회 대표로서 학생들의 권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내에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치가 있는지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등록금 반환에 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다운(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학술국장)

학생들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등록금과 관련한 학생 간담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음.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창구가 될 수 있고, 장학금 관련한 자리, 후생복지위원회 등도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강오(학생문화처장)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작년에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음.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등록금을 반환하는 방식, 두 가지 방안이 있음. 서강대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 거의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등록금 반환 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이와는 별도로 당시 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성적이 상승하여 성적관련 장학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음.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지난 10년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계속 동결되었으며, 따라서 전국 대학들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현실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봄.

이강오(학생문화처장)

특히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의결 사항

- 2020학년도 결산 확정 및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안건 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1. 보고 사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예산팀(오서준 간사 배석)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함.

| 변경 조항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9조(회의록의 공개) |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6항 (생략) | (생략) 고등교육법 제11조 9항 (생략) |

2. 의결 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2021. 4. 13.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김길선 기획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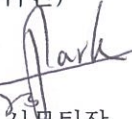


(교직원 위원)

(학생 위원)

(외부전문가 위원)

박재석




학교법인 사무팀장

정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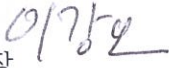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학술국장

김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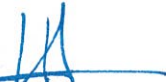
파투아 부회장

이강오



학생문화처장

이관택



기획예산팀장